



의안번호

제98호

2018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17. 11. 17.

2018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98호
----------	------

제출연월일 : 2017. 11. 17.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2018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일반회계]

- 탐정호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
 - 가야곡면 조정리 149-3번지 외 12필지 11,642㎡(토지)
- (구)한민대학교 부지 취득
 - 연산면 신양리 14-2번지 외 2필지 67,637㎡(토지), 9,114.91㎡(건물)
- 연무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
 - 연무읍 황화정리산26-4번지 외 8필지 9,865㎡(토지), 289㎡(건물)

나.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가감정 가 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량				
		사업별개요참조					

다.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가감정 가 격	처분 시기	처분사유	비고
	구분	소 재 지	수량				
		해 당 없 음					

라. 사업별 개요

○ 일반회계

1) 탑정호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취득개요

- 사업기간: 2017년 ~ 2019년
- 취득위치: 가야곡면 조정리 149-3번지 일원
- 취득면적: 토지 13필지 11,642m²
- 사 업 비: 1,411,000천원<시비100%>
- 주요기능: 수상레포츠 유치 및 수변데크 조성 등 수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관광자원과 경관이 수려한 ‘소나무 노을섬’을 연계한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필요한 토지 (농어촌공사 소유)와 교환하기 위한 대체토지 매입

○ 취득재산 대상내역: 토지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합계	11,642	1,411,000			
1	전	가야곡면 조정리 149-3	2,826	384,478	2018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	매입
2	대	가야곡면 조정리 149-4	810	116,495	2018	“	“
3	대	가야곡면 조정리 149-5	397	54,011	2018	“	“
4	대	가야곡면 조정리 149-6	228	31,018	2018	“	“
5	전	가야곡면 조정리 149-12	2,221	345,328	2018	“	“
6	유지	가야곡면 조정리 149-22	298	15,290	2018	“	“
7	유지	가야곡면 조정리 149-23	33	1,375	2018	“	“
8	전	가야곡면 조정리 166-1	1,785	246,314	2018	“	“
9	전	가야곡면 조정리 166-2	664	125,824	2018	“	“
10	임야	가야곡면 조정리 산59-1	793	25,892	2018	“	“
11	임야	가야곡면 조정리 산59-3	496	25,642	2018	“	“
12	임야	가야곡면 조정리 산59-7	595	19,427	2018	“	“
13	임야	가야곡면 조정리 산59-9	496	19,906	2018	“	“

※ 공유재산 취득시 감정가격에 따라 취득가격은 추후 변동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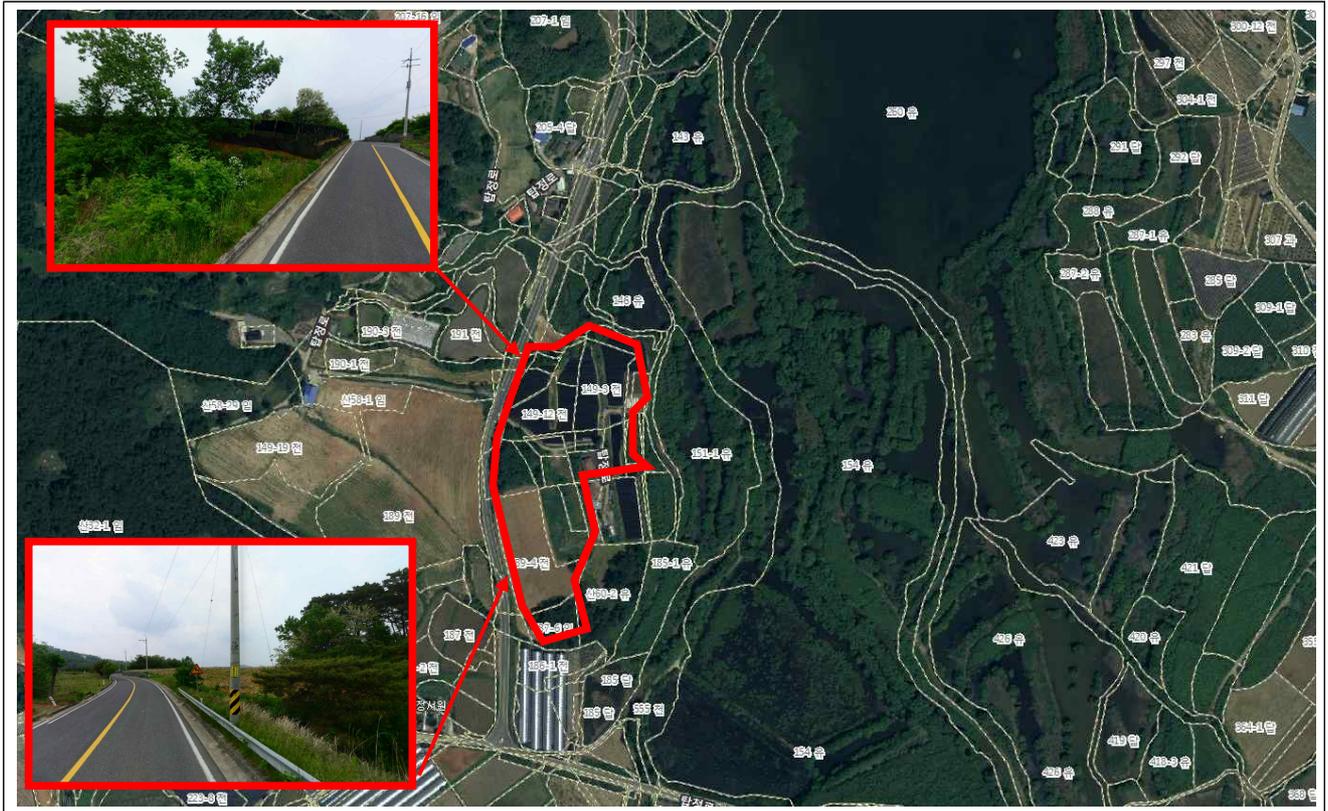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아쿠아 아일랜드, 수변데크 둘레길 등 관광객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와 교환을 위한 대체토지 매입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17. 12. ~ 2018. 06. : 부지 매입 및 토지교환
- 2018. 07. ~ 12. :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

□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구)한민대학교 부지 매입

□ 취득개요

- 사업기간: 2018년 ~ 2020년
- 취득위치: 논산시 연산면 신양리 14-2번지 일원
- 취득면적: 토지 3필지 67,637㎡, 건물 4동 9,114.91㎡
- 사업비: 5,991,000천원<시비100%>
- 주요기능: 시설 매입을 통한 도시민의 농촌체험과 휴양 및 힐링 공간 조성 및 제공, 국방대학교와 국방군사시설 관련기관 등 공공기관의 연수 및 유치를 위한 공간 활용, 황산벌 전투의 중심지로 교육적인 공간(유스호스텔)활용 등 기존 관광자원 및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연계이용으로 사업성을 제고하고 낙후된 지역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대상부지 및 건물을 매입(취득)하고자 함

○ 취득재산 대상내역: 토지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합계	67,637	3,935,000			
1	학	연산면 신양리 14-2	61,472	3,688,000	2018	체험, 교육 및 연수공간 조성	매입
2	대	연산면 신양리 14-1	2,955	177,000	2018	"	"
3	답	연산면 신양리 16-3	3,210	70,000	2018	"	"

○ 취득재산 대상내역: 건물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합계	9,114.91	2,056,000			
1	학	연산면 신양리 14-2	5,333.4	1,207,000	2018	체험, 교육 및 연수공간 조성	매입
2	학	연산면 신양리 14-2	2,455.2	597,000	2018	"	"
3	학	연산면 신양리 14-2	983.88	236,000	2018	"	"
4	학	연산면 신양리 14-2	342.43	16,000	2018	"	"

※ 공유재산 취득시 감정가격에 따라 취득가격은 추후 변동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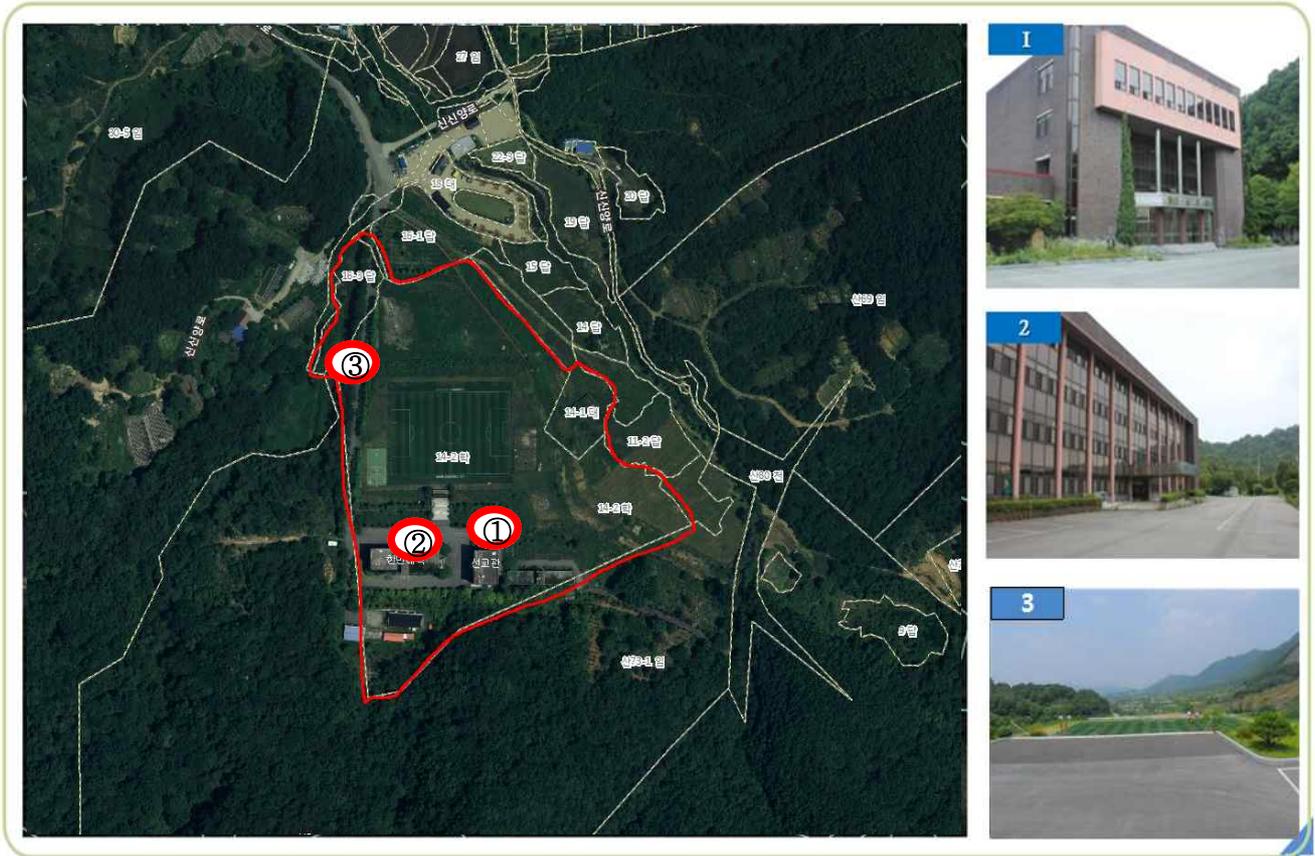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유스호스텔 등 학생 체험 및 교육시설 활용
- 국방대학교 등 공공기관의 연수 공간 활용
- 다양한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계획적 활용을 위한 매입 필요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18. 01. ~ 06. : 부지 매입
- 2018. 07. ~ 12. : 활용방안 모색 및 계획 수립
- 2019. 01. ~ 2020. 12. : 리모델링 및 계획사업 추진

□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연무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 취득개요

- 사업기간: 2018년
- 취득위치: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및 황화정리
- 취득면적: 토지 9필지 9,865㎡, 건물 1동 289㎡
- 사 업 비: 575,000천원<시비100%>
- 주요기능: 논산 선사인랜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주차불편 해소

○ 취득재산 대상내역: 토지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합계	9,865	525,000			
1	임야	연무읍 죽평리 321-16	878	50,000	2018	주차장 조성	매입
2	전	연무읍 황화정리 859-20	2,200	200,000	2018	“	“
3	답	연무읍 황화정리 846	461	30,000	2018	“	“
4	답	연무읍 황화정리 1046-1	1,029	50,000	2018	“	“
5	임야	연무읍 황화정리 산26-4	2,459	90,000	2018	“	“
6	임야	연무읍 황화정리 산26-6	1,785	65,000	2018	“	“
7	임야	연무읍 황화정리 산26-21	662	25,000	2018	“	“
8	임야	연무읍 황화정리 산26-27	261	10,000	2018	“	“
9	임야	연무읍 황화정리 산26-28	130	5,000	2018	“	“

○ 취득재산 대상내역: 건물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1	블럭	연무읍 황화정리 산26-4	289	50,000	2018	주차장 조성	매입

※ 공유재산 취득시 감정가격에 따라 취득가격은 추후 변동 있음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기 조성된 밀리터리파크 및 연무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에 따른
면회객 및 관광객 주차장 조성
- 면회객 및 관광객들의 주차불편 해소
- 지가상승 전 토지 취득으로 예산 절감 효과

4.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